

예산총칙

2024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98,444,486	23,953,335
일반회계	718,503,309	21,555,099
특별회계	79,941,177	2,398,235
기타특별회계	79,941,177	2,398,235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39,141,000	1,174,230
일광유원지 조성사업	100,000	3,000
의료급여기금	379,680	11,390
지하수관리	315,250	9,458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1,166,393	34,99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3,105,202	393,156
원자력발전지역개발	22,581,555	677,447
주차장	3,152,097	94,563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 와 같다.

제 4 조 2023년도 계속비이월사업은 별첨 "계속비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0,408,046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이용 할 수 있다.